

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

항 목 구 분		제 출 자 료	
항 목 명	세부구분	자료형태	포 함 내 용
선거사무소 등 간판·현판· 현수막 (법 제61조)	설치·철거· 교체	사 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간판·현판·현수막 설치·철거·교체 장소, 규격, 재질, 내용 ◦ 스테인리스, 합판, 철판 등 보조구조물 ◦ 특수장비(크레인 등) 사용
거리게시용 현 수막 (법 제67조)	설치·철거· 교체 및 이동 게시	사 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현수막 설치·철거·교체 장소, 규격, 재질, 내용 ◦ 오·훼손에 따른 교체 ◦ 특수장비(크레인 등) 사용 ◦ 이동게시 내역 및 장소
어깨띠 등 소품(법 제68조)		사 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어깨띠·윗옷·모자·마스코트·표찰·수기, 그 밖의 소품의 종류, 수량, 규격, 재질
신문광고(법 제69조)		신문스크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게재 신문사, 내용 및 횟수
방송광고(법 제70조)		파 일 (영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방송광고 내용
공개장소 연 설·대담 (법 제79조)	연설· 대담차량	사 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차종, 차량번호, 연단·조명·래핑 등 각종 홍보·설치물 ◦ 발전기 종류, 용량 ◦ 최초 및 최종 차량운행일 당시의 주행거리(계기판)
	확성장치, 녹 화기(LED 전 광판) 등	사 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확성장치 종류, 수량, 규격, 용량 ◦ 녹화기(LED 전광판 등) 종류, 수량, 규격, 해상도
	로고송 및 녹 화물	파 일 (음원· 영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로고송 수량, 종류, 내용 ◦ 녹화물 수량, 종류, 내용
전화(법 제59조)		사 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선거운동용 임차전화 설치장소, 대수 ◦ 전화홍보시스템(일반전화홍보시스템, 서버운영시스템 등) 운영장비
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(법 제82조의5)		사진 또는 화면스크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일시, 횟수, 통수, 내용
인터넷 광고(법 제82조의7)		파일 또는 화면스크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광고(동영상·팝업 등)의 종류 및 규격
명 함(법 제93조)		사진 또는 실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명함의 종류 및 규격

주: 1. 자료형태는 사진, 신문스크랩, 파일 외에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

2. 그 밖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항목에 대하여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